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개정	2006. 4. 17	훈령	제162호
개정	2006. 4. 17	훈령	제162호
개정	2006. 4. 17	훈령	제162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8. 1	훈령	제181호
개정	2009. 6. 26	훈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1. 3. 31	훈령	제201호
일부개정	2011. 9. 23	훈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2. 3. 14	훈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3. 5. 8	훈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3. 10. 7	훈령	제219호
일부개정	2013. 12. 30	훈령	제220호
일부개정	2014. 1. 21	훈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4. 4. 14	훈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4. 7. 18	훈령	제236호
일부개정	2015. 4. 10	훈령	제239호
일부개정	2015. 7. 6	훈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6. 7. 21	훈령	제258호
일부개정	2017. 11. 20	훈령	제266호
일부개정	2018. 1. 1	훈령	제267호
일부개정	2018. 5. 1	훈령	제268호
일부개정	2018. 8. 13	훈령	제270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일부개정	2019. 9. 18	훈령	제284호
일부개정	2020. 5. 22	훈령	제289호
일부개정	2020. 7. 27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21. 3. 4	훈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11. 5	훈령	제300호
일부개정	2021. 12. 28	훈령	제304호
일부개정	2022. 3. 7	훈령	제306호
일부개정	2022. 4. 22	훈령	제308호
일부개정	2022. 10. 7	훈령	제312호
일부개정	2023. 3. 6	훈령	제315호
일부개정	2023. 11. 1	훈령	제323호
일부개정	2024. 1. 1	훈령	제325호
일부개정	2024. 4. 1	훈령	제3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배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2019·9·18>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시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9, 2006·4·17, 2007·7·2>

②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9, 2007·7·2, 2008·8·1>

③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9, 2007·7·2>

④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1·9, 2007·7·2>

⑤ 읍·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1·9, 2007·7·2>

부칙 <1998·1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별표 1의 기획감사담당관실란의 정원중 전산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1·3·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존속시한폐지) 이천시훈령 제116호 이천시정원관리기관별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정원배정규정중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전산8급1명”은 표준정

원시행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8·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민원실 근무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중 “대민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감사실(감사담당)”을 “혁신정책담당관(감사담당)”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대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중 “대민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③ 「기업애로해소 움브즈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대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④ 「기획조정 통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하고, 제2조 및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내지 제4항, 별지 1호 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하

며, 제3조제1호 및 제6조, 제7조제2항내지 제3항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⑤ 「이천시 지도 방문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담당”을 “정책기획담당”으로 한다.

⑥ 「이천시 관용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하며,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며, “문화공보실장”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며, 별지 2호 서식 뒷면중 “기획감사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하고, “644-2070”을 “644-2041”로 한다.

⑦ 「이천시 일상감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내지 제2항, 제9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⑧ 「이천시 투자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내지 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내지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⑨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⑩ 「법제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9항중 “실·국장”을 “국장·담당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3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하며, 제22조제2항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며, 별표 1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⑪ 「이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대민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하며, 제11조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⑬ 「이천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제8조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이천시 공무원 사무인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0조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⑮ 「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기획감사실장”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5호중 “시민생활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7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9호중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10호중 “문화공보실장”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⑯ 「이천시 문서평가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시민생활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중 “제2건국추진담당주사”를 “서무후생담당주사”로 한다.

⑰ 「이천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후생복지담당주사”를 “서무후생담당주사”로 한다.

⑱ 「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회계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제4조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하며, 제5조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며, 제5조 및 제9조중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⑲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이천시 중리동 173-6번지”를 “이천시 시청뒷길 1”로 한다.

㉔ 「이천시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㉕ 「이천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중 “도시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8·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6조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4조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이천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 일상감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이천시 투자심사업무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⑦ 「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9호중 “농림

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⑧ 「이천시 문서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혁신정책담당관, 농림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으로 한다.

⑨ 「이천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 혁신정책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이천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 평생학습과장”을 “기업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한다.

⑪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 혁신정책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9·6·26 훈령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훈령 제2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3 훈령 제20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14 훈령 제2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8 훈령 제2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7 훈령 제2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이천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②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성희롱 예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이천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12·30 훈령 제2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 훈령 제2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4 훈령 제2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8 훈령 제2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0 훈령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

부칙 <2015·7·6 훈령 제2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1 훈령 제2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훈령 제2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훈령 제2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 훈령 제2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3 훈령 제27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훈령 제2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이천시 담당관 과 소 업무지도 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과·소 지도담당

1. 지도·감독 및 결재

국 명	과 명	사업소명	비 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사업소	
종합민원국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 미래전략담당관은 시장 직속이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업무협조

국 명	사 업 소 명	비 고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④ 「이천시 방위지원본부 규정」 제4조제3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민생활지원”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하며,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천 시 민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

본 부 장		부 시 장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		종합상황실장	
제3901부대작전장교 이천경찰서경비과장		안전도시건설국장	
○ 군·경 정보 작 전 요 원		○ 각 지 원 반 장 (8) ○ 정 책 기 획 팀 장 ○ 민 방 위 팀 장	

총괄지원 반 장	자치 행정 과장	인력 동원 지원 반장	안전총괄 과장	건설수송 지원반장	건설 과장	의료 구호 지원 반장	복지정책 과 장 보건소장	통신 지원 반장	이 천 전 화 국 선로과장	보 급 (급 식) 지원반장	농업 정책 과장	홍보 지원 반장	홍보 관광 담당관	재정 지원 반장	기획예산 담당관
- 자치행정담당 - 인사담당		민방위담당		- 건설행정담당 - 도로시설담당 - 교통행정담당 - 수송업체 - 건설업체		- 복지기획담당 - 급수담당 - 의약담당 - 보건행정담당 - 소방서관계자 - 병원장		- 전화국총무과장 - 전화국전송과장 - 정보통신담당		- 쌀사랑담당 - 노인정책담당 - 위생담당 - 농협양정담당 - 요식업조합장 - 여성단체협의회장		- 홍보담당 - 교육청서무담당 - 이천유선방송사		- 예산담당 - 경리담당 - 세외수입체납담당	

⑤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⑥ 「이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별표 1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이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민명예감사관증 후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031-644-2041)로”를 “감사법무담당관(☎ 031-644-2041)으로”로 한다.

⑨ 「이천시 시장 참 공약 실천관리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및 제1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 및 별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⑪ 「이천시 투자심사 업무관리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이천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이천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⑭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2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이천시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⑰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9·18 훈령 제2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2 훈령 제2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7 훈령 제29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4 훈령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중 “홍보관광담당관”을 “문예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이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③ 「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4조제10호 중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중 “교통정책담당”을 “교통행정담당”으로,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홍보담당”을 “홍보기획담당”으로 한다.

④ 「이천시 담당관·과·소 업무지도 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담당관·과·소 지도담당

1. 지도·감독 및 결재

국 명	과 명	사업소명	비 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종합민원국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	
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업무협조

국 명	사 업 소 명	비 고
자치행정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⑤ 「이천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 중 부서란의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여성보육과”를 “아동보육과”로, “문화예술과”를 “문예관광과”로 한다.

부칙 <2021. 11. 5 훈령 제3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8 훈령 제304호>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7 훈령 제30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2 훈령 제30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훈령 제3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6 훈령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담당관 과 소 업무지도 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 · 과 · 소 지도담당

1. 지도 · 감독 및 결재

국 명	과 명	사업소명	비 고
행정자치국	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경제문화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	
도시주택국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업무협조

국 명	사 업 소 명	비 고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② 「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 제6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7조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이천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중 기록확인란 중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 서	계	현업실무원					기술사무원							행정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검침	농기계임대보조	과학실험보조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방문간호사	영양플러스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국가결핵예방사업	치매사례관리사	사무보조	의료급여관리사	무한돌봄사례관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문화사무보조	작은도서관운영		
총 계	222	16	18	3	15	3	1	7	2	3	1	1	1	20	2	8	4	12	1	15	11	14	64
본청 소계	152	8												13	2	8	4	12	1	15	11	14	64
민원여권과	5													5									
세정과	1													1									
체육진흥과	3	3																					
복지정책과	10														2	8							
청년아동과	17																4	12	1				
자원순환과	64																						64
일자리정책과	1													1									
공원녹지과	1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도 서 관 과	32	5													1						15	11		
허 가 과	1														1									
토 지 정 보 과	2														2									
도 로 관 리 과	15														1								14	
직속기관 소계	42	2		3	15	3	1	7	2	3	1	1	1	3										
보 건 소	21	1				3	1	7	2	3	1	1	1	1										
농 업 기 술 센 터	21	1		3	15									2										
사업소 소계	22		18											4										
상하수도사업소	19		18											1										
차량등록사업소	3													3										
읍면동 소계	6	6																						
장 호 원 읍	2	2																						
백 사 면	1	1																						
설 성 면	2	2																						
호 법 면	1	1																						

- ⑤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6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 ⑥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아동보육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 ⑦ 「이천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4조제4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소통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천 시 민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

		본 부 장	부 시 장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	제3901부대작전장교 이천경찰서경비과장	종합상황실장	안전건설국장
○ 군·경 정보 작 전 요 원		○ 각 지 원 반 장 (8) ○ 정 책 기 획 팀 장 ○ 민 방 위 팀 장	

총괄지원 반장	행정 지원 과장	인력 지원 반장	안전총괄 과장	건설수송 지원반장	건설 과장	의료 구호 지원 반장	복지정책 과장 보건소장	통신 지원 반장	이 천 전 화 국 선로과장	보 급 (급 식) 지원반장	농업 정책 과장	홍보 지원 반장	홍보 담당관	재정 지원 반장	기획예산 담당관
◦ 행정지원담당 ◦ 인사담당		◦ 민방위담당		◦ 건설행정담당 ◦ 도로건설담당 ◦ 교통기획담당 ◦ 수송업체 ◦ 건설업체		◦ 복지기획담당 ◦ 급수담당 ◦ 의약담당 ◦ 보건행정담당 ◦ 소방서관계자 ◦ 병원장		◦ 전화국총무과장 ◦ 전화국전송과장 ◦ 정보통신담당		◦ 쌀사랑담당 ◦ 노인정책담당 ◦ 위생담당 ◦ 농협양정담당 ◦ 요식업조합장 ◦ 여성단체협의회장		◦ 언론홍보담당 ◦ 교육청서무담당 ◦ 이천유선방송사		◦ 예산담당 ◦ 경리담당 ◦ 세외수입채납담당	

⑧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⑨ 「이천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⑩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별표 중 사무처리 부서란 및 소관 실·과·소관의 사무의 내용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여권과”로 한다.

⑪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중 “문예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무후생담당”을 “직원복지담당”으로 한다.

⑬ 「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 중 “체육지원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각각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부칙 <2023. 11. 1 훈령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천시 담당관·과·소 업무지도 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과·소 지도담당

1. 지도·감독 및 결재

국 명	과 명	사업소명	비 고
행정자치국	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경제문화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	
도시주택국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업무협조

국 명	사 업 소 명	비 고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부칙 <2024·1·1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 훈령 제326호>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4·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4·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회사무과)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4·4·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개정 2024·4·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제2조제4항 관련)

[별표 5] 〈개정 2024·4·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읍·면·동)

(제2조제5항 관련)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